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4
--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7년 11월 30일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07. 5.11)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 개정(2007.10. 4)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·제39조·제41조를 제44조·제45조·제47조로 하고, 동법시행령 제19조의4를 제54조로 변경함(안 제1조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발췌 : 별첨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, 제45조, 제47조
- 나.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54조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8조 · 제39조 · 제41조”를 “제44조 · 제45조 · 제47조”로, “제19조의4”를 “제5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 <u>제39조·제41조</u>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<u>제44조</u> <u>제45조·제47조</u>.....<u>제54조</u> 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4조(정례회)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5조(임시회) ①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임시회의 소집은 시·도에서는 집회일 7일 전에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7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③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